

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‘만 나이’로 법적·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시행 ‘23.6.28.)에 따라 ‘만 나이’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‘만 나이’를 규정하고 있는 평창군 13건의 조례 일괄개정

나. 나이에서 ‘만’ 표현 일괄 삭제

- ‘만 00세’ → ‘00세’

※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‘만’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음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행정기본법」, 「민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3. 7. ~ 2024. 3. 27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 - 4223(2024.3.14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[기획실 - 4223(2024.3.14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 -10152(2024.3.19.)호]

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일괄개정하여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만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만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4호 중 “만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 본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65세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만18세 이상 만49세”를 “18세 이상 49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만6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이상의 노인”을
”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전단 중 “만7세 이상 만12세”를 “7세 이상 12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“만13세 이상 만18세”를 “13세 이상 18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“만19세 이상 만64세”를 “19세 이상 64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전단 중 “만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12조(「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3조(「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중 “만60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14조(「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1호 중 “만70세”를 “70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정모니터”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평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,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18 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----- 만19세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19세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 ----- 19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관람료 등) ①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보호자가 있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 우대자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19조(관람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6세 ----- ----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 노인”이라 함은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<u>만 65세</u>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어려운 <u>65세</u>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..</p>
<p>제3조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<u>만 65세</u>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. 다만, <u>만 65세</u>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65세</u> 이상 ----- ----- . <u>다</u> <u>만, 65세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<u>만65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동육아나눔터”란 <u>만 12세</u>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2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년”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<u>만18세 이상 만49세</u>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 <u>18세 이상 49세</u>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

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“노인”이란 <u>만65세</u>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7. ~ 12. (생 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 7. ~ 12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. 1. ~ 3. (생 략) 4. <u>만 6세</u> 이하 어린이와 <u>만 65세</u> 이상의 노인, 다자녀 가정 5. ~ 16. (생 략)	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6세</u> 이하 어린이와 <u>65세</u> 이상의 노인, 다자녀 가정 5. ~ 16. (현행과 같음)

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
1.“어린이”란 초등학생 또는 <u>만7세 이상 만12세</u>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	1.----- <u>7세 이상 12세</u> ----- -----.
2. “청소년”이란 <u>만13세 이상 만18세</u>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, 고등학생을 말한다.	2. ----- <u>13세 이상 18세</u> ----- -----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“어른”이란 <u>만19세 이상 만64세</u>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	4. ----- <u>19세 이상 64세</u> ----- -----.
5. ~ 10. (생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<u>만19세</u>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.	11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.
12. (생략)	12. (현행과 같음)

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<u>거주하는</u>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2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
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략) 3. “초로기 치매”란 <u>만60세</u>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. 4. ~ 7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60세 ----- -----. 4. ~ 7. (현행과 같음)

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)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	제8조(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) - ----- ----- ----- -----

관계 법령 발췌

□ 행정기본법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27.]

□ 민법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2. 12. 27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065